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6 년 1 월 14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
(영문명) Woori Asset Trust
(홈페이지) <http://www.wooriat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, 13층(역삼동, 삼성빌딩)
(전 화) (02) 6202-3000

대 표 이 사 : 김 범 석

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경영관리본부장
(성 명) 박 판 수 (전 화) (02) 6202-5155

작 성 자 : (직 책) 사원
(성 명) 전 이 삭 (전 화) (02) 6202-3004

제 출 이 유 :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, 「동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11-9호)

주주총회소집 결의

1. 일시	2026. 1. 14(수) 16:30	
2. 장소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, 13층(역삼동, 삼성빌딩) 대회의실	
3. 의안 주요내용	[결의사항] ▣ 제1호 : 사내이사 선임의 건 ▣ 제2호 : 대표이사 선임의 건	
4. 이사회 결의일(결정일)	2026. 1. 14(수)	
-사외이사 참석여부	참석(명)	3명
	불참(명)	-
-감사(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) 참석여부	-	
5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-	

【이사선임 세부내역】

성명	생년 월일	임기	신규 선임여부	주요경력	현직	최종 학력	국적
김범석 (金範錫)	1966. 05.15	제2026-1차 임시주주총회 선임시부터 (2026.01.14.) ~ 2026.12.31.	재선임	◦우리은행 삼성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◦중국우리은행 중경분행장 ◦우리은행 경기중부영업본부 기업지점장 ◦우리은행 여의도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◦우리은행 대기업심사부 본부장 ◦우리은행 영업총괄그룹 본부장 ◦우리은행 부동산금융그룹 집행부행장보 ◦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 兼 개인그룹 부문장 ◦現 우리자산신탁 대표이사(2025.01.01.~현재)	-	학사	대한 민국

【사외이사선임, 감사위원선임, 감사선임, 사업목적 변경, 집중투표제 도입 · 배제 세부내역】
- 해당사항 없음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상법, 정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한 때 공시한다.
- 주2) “의안 주요내용”은 의안 안건별로 요약하여 주요내용을 기재하되, 사업목적 변경, 이사·사외이사의 선임, 감사(감사위원회 위원포함)선임, 집중투표제 도입·폐지안건은 해당 세부내역서식에 따라 별도로 기재한다.
- 주3) 임원선임의 경우 “의안 주요내용”에 “상근이사 ○명, 비상근이사 ○명, 사외이사 ○명, 감사위원 ○명, 감사 ○명 선임” 등의 방식으로 임원 선임의 내용을 기재하고, 임원해임의 경우 “의안 주요내용”에 해임임원별로 각각 해임사유,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- 주4)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은 【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】란에 기재한다.
- 주5) “신규선임여부”는 “신규선임” 또는 “재선임”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6) “주요경력”은 선임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주요경력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7) “현직”은 신고일 현재 당해임원의 소속기관명 및 직책을 기재하되, 다른 상장법인의 임원(상근·비상근이사, 사외이사, 감사위원, 감사)인 경우에는 그 임기를 함께 기재하며, 임원선임 이후 퇴임여부·시기 등을 함께 기재한다.
- 주8) 【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】의 “사외이사 여부”는 “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” 또는 “사외이사인 감사위원”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9) 【감사선임 세부내역】의 “상근여부”는 “상근” 또는 “비상근”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10) 【집중투표제 도입·배제 세부내역】은 도입하는 경우 “변경 전”에 “배제”, “변경 후”에 “적용”을 기재하고, 폐지하는 경우 그 반대로 기재한다.
- 주11) 상기 기재사항 외의 외부감사인 변경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